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운영규정

규정명 변경 : 2026.9.1

2025.06.19. 제정 2025.07.25. 일부개정 2025.10.14. 일부개정 2026.07.08. 일부개정
2026.09.01. 일부개정

<앵커사업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이 규정은 교육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앵커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
2. “Open UIC”란 “Open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의 약자로 대학이 Open Innovation HUB가 되어 지역 혁신주체와 협력생태계를 조성, 지역사회부터 글로벌까지 다양한 동반성장 체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앵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앵커사업단 또는 단위과제 실행부서에 배치한 인력으로, 사업 기획, 운영 및 정산,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9.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앵커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9.1.)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훈령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9.1.)

제4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본 대학교와 부산앵커센터의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1.)

제5조(권한과 책임) 총장은 앵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6.9.1.)

1. 앵커기본계획 및 앵커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
5.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

제6조(조직) ① 앵커사업단에는 앵커사업팀, Co-Op혁신교육센터, 지산학협업센터, 창업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6.7.8., 2026.9.1.)

② 앵커사업단장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사업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9.1.)

③ 사업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6.9.1.)

1. 앵커기본계획 및 앵커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작성·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 앵커사업단은 사업의 운영지원,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세부사업의 수행을 담당한다. (개정 2026.9.1.)

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앵커사업단 또는 단위과제 실행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9.1.)

제7조(앵커지산학협력위원회) ① 사업의 지·산·학·연 협력방안 수립을 위하여 앵커지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1.)

② 앵커지산학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직원, 재학생 및 외부 전문가(지자체, 산업체, 지역혁신기관 등)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

③ 앵커지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9.1.)

1. 지자체, 산업체, 대학 간 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자문
2. 지역 수요 기반의 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3. 단위과제별 정책 제안 및 실행 방안 자문
4.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7조의2(앵커전략추진위원회) ①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앵커전략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1.)

② 앵커전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

③ 앵커전략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9.1.)

1. 앵커사업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연도별 사업 추진방향 및 핵심전략 수립
3. 핵심성과지표(KPI) 및 성과목표 설정
4. 사업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5. 단위과제 신설·통합·폐지 등 사업구조 개편
6. 기타 사업의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26.7.8.]

제8조(앵커운영위원회) ①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앵커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7.8., 개정 2026.9.1.)

② 앵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앵커사업단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

- ③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앵커운영위원회는 앵커사업부단장, Co-Op혁신교육센터장, 지산학협업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앵커사업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25., 2026.7.8., 개정 2026.9.1.)
-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앵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7.8., 개정 2026.9.1.)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 앵커사업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지침 제·개정 심의
 3. 앵커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4.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검토
 5. 성과관리 및 확산 계획 수립
 6. 단위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7.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의2(창업운영위원회) ① 창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업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1.)

- ② 창업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앵커사업단장으로 하고, 대학, 지자체 및 산하기관, 산업체 소속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
- ③ 창업운영위원회는 앵커사업단장, 앵커사업부단장, 분야별 책임교수, 창업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1.)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창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창업교육 시행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창업교육 강화,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변경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관련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4. 창업교육 수요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본조 신설 2025.7.25.]

제8조의3(앵커실무위원회) ① 앵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세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앵커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1.)

- ② 앵커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앵커사업 부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6.9.1.)
- ③ 위원은 앵커사업을 전담하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
- ④ 앵커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9.1.)
1. 사업 추진일정 및 성과지표 관리
 2. 사업 추진 현황 진단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3. 단위과제별 세부프로그램 추진계획 점검
 4.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26.7.8.]

제9조(앵커사업 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앵커사업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1.)

② 앵커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앵커사업단장으로 하고, 교직원, 재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

③ 앵커사업 자체평가위원회는 앵커사업 부단장, 앵커사업팀장, Co-Op혁신교육센터장, 지산학협업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미래전략팀장, 재정혁신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교직원, 재학생 및 외부 전문가는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7.25., 2026.7.8., 2026.9.1.)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앵커사업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9.1.)

1. 사업성과 및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사업 추진 실적 분석
3.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조치계획 수립
4.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앵커사업 자체평가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0조(분과운영위원회) ① 앵커사업 분과별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화분야별 분과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7.8., 2026.9.1.)

1. 미래모빌리티 분과운영위원회
2. 디지털테크 분과운영위원회
3. 라이프스타일 분과운영위원회
4. 문화관광 분과운영위원회

② 각 분과별 위원장은 책임교수로 하고, 산업체 및 지역혁신기관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

③ 분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9.1.)

1. 특성화 분야별 운영방향 및 앵커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2. 주문식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협력
3. 산학 공동 연구개발(R&D) 발굴 및 수행 지원
4. Co-Op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지원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0조의2(지역기업혁신성장위원회) ① 동명대학교 앵커사업의 참여기업 간 산학협력 활성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역기업혁신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7.8., 2026.9.1.)

② 위원장은 앵커사업단장과 참여기업 대표가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은 분야별 책임교수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7.8., 2026.9.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7.8., **2026.9.1.**)

1. **앵커사업의** 산학협력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2. 참여기업 간 협력방안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3. 표준현장 실습, 주문식교육과정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계
4. 기술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25.10.14.]

[본조 제목 변경 2026.7.8]

제11조(사업 관리) ①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경비를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사업비 집행은 교육부 훈령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부산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및 대학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9.1.)

제12조(성과급) ① 사업에 참여하는 교직원에게 사업 수행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해당 연도 사업수행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되,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운영경비 및 수당지급)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